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73호 (2015-05) 발행일 : 2015. 02. 23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을 이용한 접근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우므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 연금의 연금화 정책이 필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이상 중위 소득 계층 기준 39~53%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본 연구에서 추정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할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 전환율 4% 수준을 감안한다면 퇴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퇴직연금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시금 보다 연금에 유리한 세제 혜택과 함께 좀 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연금전환정책인 의무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백혜연
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 퇴직연금 현황 및 퇴직연금운용의 문제점

■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택과 기업의 비용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일시금을 연금화 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
- 퇴직금을 회계장부 상의 자산이 아닌 사외적립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화 (annuitization)에는 실패하였음

- 퇴직급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의 일시금 지급 방식이 여전히 우세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중에서는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¹⁾가 2014년 3/4분기 기준 68%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퇴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시점에서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여 연금전환율이 매우 낮음

○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DB형의 경우, 은행권에 예금으로 예치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금운용은 전무한 실정임

〈표 1〉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적립금	890,338	606,338	204,622	6,997	72,381
(비율)	(100)	(68.1)	(23.0)	(0.8)	(8.1)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 통계

- DB형의 경우 기업들은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적립금의 대부분인 98% 가까이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음

〈표 2〉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595,222	98.2	162,152	79.3	6,336	90.6	59,196	81.8	822,905	92.4
실적배당형	8,964	1.5	39,507	19.3	632	9.0	7,587	10.5	56,690	6.4
기타	2,151	0.3	2,964	1.4	29	0.4	5,598	7.7	10,743	1.2
총계	606,338	100	204,622	100	6,997	100	72,381	100	890,338	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 통계

-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 1년 이하 상품에 80% 이상이 집중 투자되고 있음. 이렇게 기업들이 단기 예·적금 상품 등에 예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입자의 일시금 선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지불준비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표 3〉 원리금 보장 상품의 적립금 운용 기간별 비중 (단위: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전체
1년 미만	4.0	1.8	0.3	4.9	1.0	3.3
1년형	80.9	67.1	86.7	73.2	98.0	77.0
1년~3년	4.5	3.2	0.5	6.0	0.4	4.1
3년형	6.4	11.5	3.1	12.7	0.6	8.3
3년 초과	4.2	5.1	0.0	3.0	0.0	3.9
금리연동형 ¹⁾	0.0	11.2	9.4	0.1	0.0	3.4

주: 1) 금리연동형은 상품 구조상 만기 개념이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 통계

1)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뉨. DB형은 급여, DC형은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DB형의 경우 기업,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있음. IRP는 퇴직급여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한 자가 가입대상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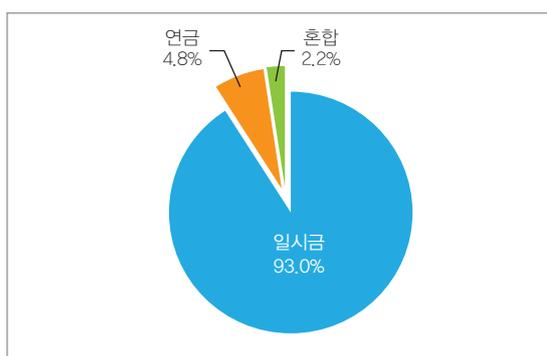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은행이자율과 급여지급수준의 기준이 되는 임금상승률 간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경우 기업은 이자율과 임금상승률 차이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 기업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함

2.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수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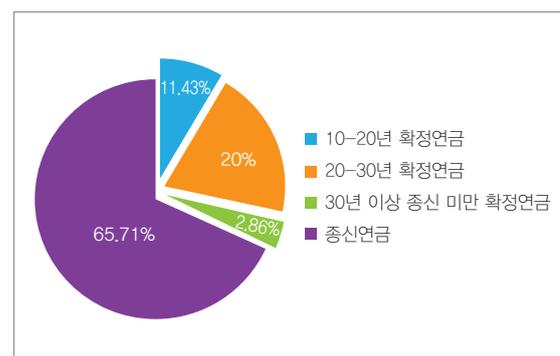
■ 설문 대상자의 퇴직급여 수급 방법 분석

-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현 50~60대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수급 방법과 퇴직금 사용 출처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대상자 중 93%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4.8%가 퇴직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2.2%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합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퇴직자들도 대다수가 일시금 수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음
- 연금을 선택한 7%의 응답자들에 대한 연금 수급기간을 분석한 결과, 연금을 선택한 대상자들의 약 70%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음(55세의 기대여명이 약 30년²⁾임을 감안하여 수급 기간 30년 이상 연금을 선택한 응답자들을 합함)
 - 따라서 연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선택한 다수는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고려하여 퇴직급여를 노후소득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1]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퇴직 시 퇴직급여 수급 방법



[그림 2]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들의 수급기간별 비중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 설문 대상자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 받은 사람들의 퇴직금 사용 출처

2)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통계청 생명표 상의 55세(남녀 전체) 기대여명 29.16년을 종신연금과 유사한 확정 연금의 수급기간으로 가정함.

-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이 2014년 3사분기 기준 4% 밖에 되지 않으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 받은 퇴직자의 퇴직금 중 일부가 연금이나 금융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연금전환율을 확인하고자 퇴직금 사용처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함
- 사용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질문. 생활소비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 항목, 부동산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물투자 항목, 그리고 예·적금 및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금융 항목,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
 - 부채상환(17.15%)과 예·적금(16.54%), 그리고 생활소비자금(16.01%)에 가장 많이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 달리 IRP 및 저축성 보험에 재투자된 비중은 각각 1.12%, 2.21%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
- 설문조사 결과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투자한다기보다는 퇴직 시 가정의 부채 및 소비에 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 이 결과는 퇴직급여가 미래의 노후소득원보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목적이 더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로 부터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적연금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 주어야 함
 - 그러나 퇴직급여제도는 노후소득보장 목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급여제도 본래의 취지 및 목적과 역할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선할 필요 있음

〈표 4〉 설문조사 대상자들 중 퇴직금을 선택한 퇴직자들의 퇴직금 사용내역 (단위: %)

퇴직금 사용 출처	소 비						실물투자		금 용				기타 여행 자금/ 기부금 /예비 자금	
	생활 소비 자금	부채 상환	주거비 (주택 구입 및 전/ 월세)	자녀 및 가족에게 이전 (사적 이전)	자녀 교육비 및 자녀 결혼 (준비)자금	의료비	사업 자금	부동산 투자	예적금	주식 및 펀드 등 직간접 투자	IRP 가입	저축성 보험 가입		보장성 보험 가입
전체 대상 평균 사용 비중	16.01	17.15	11.44	1.53	6.44	2.05	12.52	6.48	16.54	5.03	1.12	2.21	1.13	0.3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3. 우리나라 연금전환율 현황과 주요국의 연금전환정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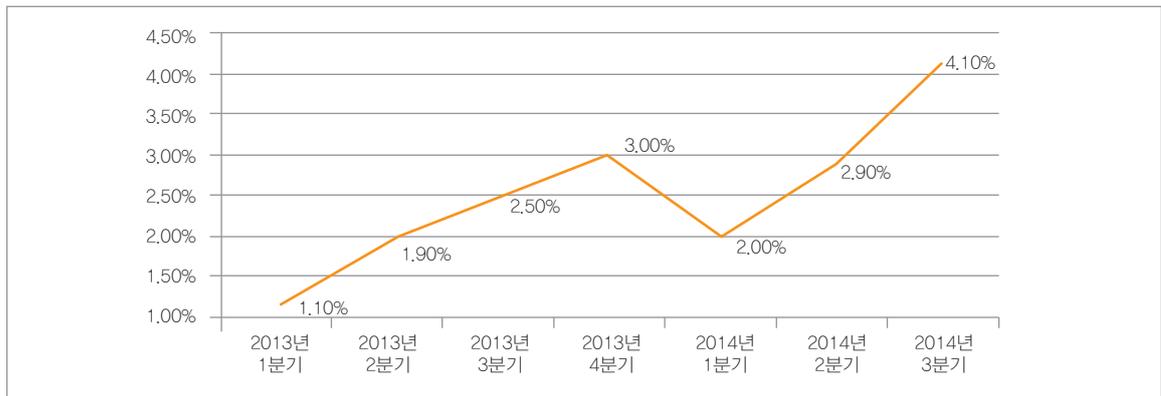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금퍼즐(Annuity Puzzle)³⁾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은 퇴직 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금으로 수령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노후소득 마련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음

3) 연금퍼즐이란 은퇴자의 장수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신연금이 유리하나 종신연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연금화를 하지 않는 재무행위로 정의됨.

- 2013년 1사분기~2014년 3사분기의 퇴직연금 전환율⁴⁾을 비교해보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즉,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자들 중 95%이상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한 번에 목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후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러므로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으로부터 퇴직 후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전환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그림 3]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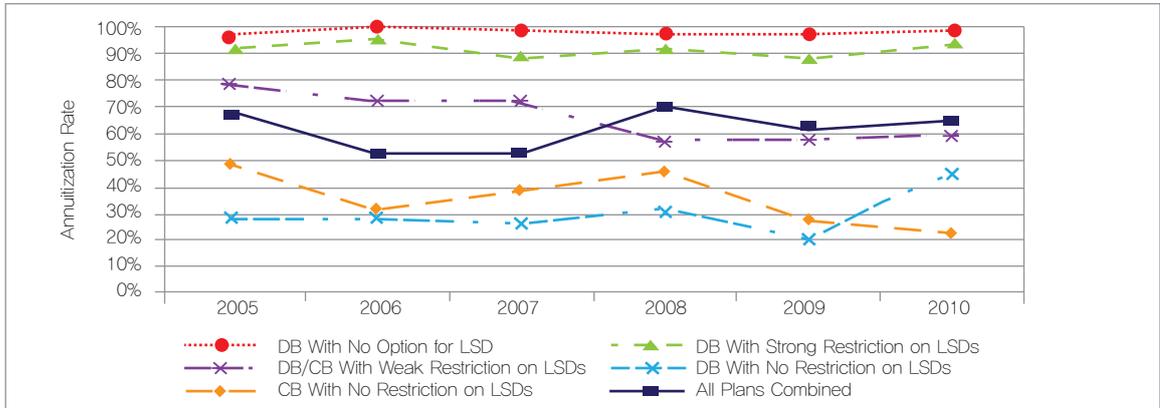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영업실적 보고서(2014년 9월말 통계)

■ 미국과 영국의 연금전환율 및 연금전환정책

- 해외 주요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낮은 연금전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금전환정책은 크게 의무 연금전환정책과 디폴트 연금전환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특히 연금전환 의무화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연금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주로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의무 연금전환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강제함. 영국을 의무 연금전환정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들 수 있음
 - 의무 연금전환정책의 장점은 개인의 장수리스크와 투자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가되며, 그로 인하여 사망시점까지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 단점으로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시킨다는 점과 연금 공급자의 지급 불능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임
-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은 디폴트 옵션을 연금전환으로 선택할 경우 연금 수급 시 퇴직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연금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에는 상품의 일시금 옵션에 대한 제한 여부에 따라 연금전환율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임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모든 연금 플랜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65.6%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시금 옵션이 없는 플랜의 경우 9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4) 연금전환율이란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 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로 정의됨.

[그림 4] 미국의 연금 종류별 연금전환율 비교¹⁾



주: 1) 2005~2010년 동안 50~75세 시점에 지급 방법을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 형태로 선택한 대상자 기준. 단, 일시금 옵션 제한 조건(restriction on Lump-Sum Distribution)이 계약 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함
 자료: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stimates from data provided by Aon Hewitt

- DB형과 CB⁵⁾(Cash Balance Plan) 연금을 분석한 결과 일시금 옵션 제한이 없는 플랜의 경우 연금 전환율이 27.3%에 불과하나, 일시금 옵션이 없는 플랜의 경우 연금 전환율이 100%에 다다를 정도로 가장 높은 연금 전환율을 보이고 있음

- 연금 종류별로 연금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일시금 옵션 제한이 없는 DB형 연금의 경우 연금 전환율이 44.3%, 일시금 옵션 제한이 없는 CB는 22.3%이었음

○ 영국의 경우 가장 강력한 연금전환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DB형 뿐만 아니라 DC형, IRA 등 모든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연금전환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일시금도 허용

- 영국은 과거부터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증대시킴. 적용제외를 통해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게 되면서 공적연금과 동일한 종신연금 형태의 지급 방식으로 제한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적립금의 25%까지는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75% 이상은 무조건 연금으로 전환해야 함. 따라서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100%보다 낮지만 상당히 높은 연금전환율을 보이고 있음

4. 세대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40%⁶⁾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가입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여 보장성 수준을 검토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퇴직연금가입기간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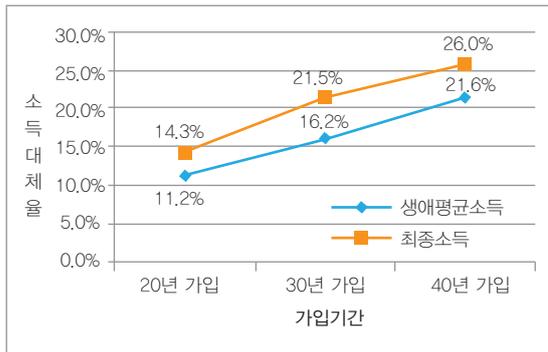
5) 현금잔액제도 Cash Balance Plan(CB): DB형과 DC형의 혼합적인 제도로서 퇴직금액은 DC형과 같이 변동하는데 반해 운용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는 Hybrid형 제도임

6) 가입기간이 1988~1998년일 경우 소득대체율 70%, 가입기간이 1999~2007년일 경우 60%, 가입기간이 2008~2027년일 경우 50%에서 0.5%p씩 감소, 가입기간이 2028년 이후일 경우 40%의 소득대체율 적용

○ 퇴직연금을 종신연금 형태로 전환했을 때 가입기간과 운용수익률의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가입가능기간을 고려하여 20년 가입기준을 참조하는 경우, 퇴직연금은 11~14%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계산됨(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와 최종소득 대비 % 방법으로 산출)
- 운용수익률이 비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3%), 20년 가입에 따른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9~11%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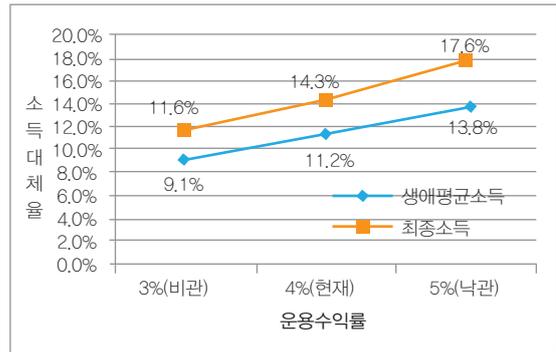
[그림 5] 가입기간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주: 1) 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그림 6] 운용수익률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주: 1) 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이 갖춰진다는 것을 전제한 합계 소득대체율 추정

○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별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정하고 동일한 기간을 퇴직연금가입기간에도 적용

- 대졸 중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1955년생은 평균 18년을 가입하고, 1964년생은 25년, 1974년생은 29년을 가입할 것으로 추정됨

○ 대졸기준으로 소득계층별 합계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결과 소득계층 중위를 기준으로 1955년생은 38%, 1964년생은 46%, 그리고 1974년생은 51%로 추정됨

- 대졸 소득계층 중 합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위소득계층으로 1970년생이 소득대체율 67%로 추정됨
- 1970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험상 공·사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추정된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에 개인연금⁷⁾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극히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중요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하여 최소 수급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강제화 한다거나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적용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해외 주요국들의 연금전환정책을 참고할 필요 있음

7) 류건식 외(2009)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에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6.3~7.5%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수치를 본 연구의 합계 소득대체율(국민+기초+퇴직연금)에 추가한다면 대졸이상, 중층 기준 가장 합계 소득대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970년생의 경우 약 60%(53.91% +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7.5%)로 추정되고, 가장 합계 소득대체율이 낮을 것(본 연구에서 출생코호트는 1955~1994년생까지로 제한함)으로 예상되는 1955년생의 경우 약 46%(38.5% +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7.5%)로 추정됨

〈표 5〉 출생코호트별 소득계층에 따른 공·사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대졸 기준) (단위: %)

출생 연도	소득계층								
	하층			중층			상층		
	1 ¹⁾	2	3	1	2	3	1	2	3
1955	33.80 (18.33년) ²⁾	41.32	51.20	24.45 (18.75년)	28.39	38.50	22.49 (19.66년)	25.36	35.96
1959	37.18 (21.07년)	43.08	54.44	27.31 (21.55년)	30.47	42.09	25.06 (22.66년)	27.35	39.54
1964	41.32 (24.49년)	45.92	59.12	30.78 (25.05년)	33.30	46.81	28.12 (26.28년)	29.92	44.09
1969	46.86 (27.91년)	50.59	65.64	35.07 (28.55년)	37.16	52.55	31.25 (29.94년)	32.67	48.81
1974	45.70 (28.64년)	49.07	64.51	34.29 (29.30년)	36.19	51.98	30.60 (30.72년)	31.89	48.45
1979	42.31 (28.61년)	45.35	60.77	31.95 (29.27년)	33.65	49.43	28.63 (30.70년)	29.79	46.34
1984	39.77 (28.65년)	42.51	57.95	30.11 (29.31년)	31.65	47.45	27.04 (30.73년)	28.09	44.65
1989	37.72 (28.67년)	40.21	55.67	28.57 (29.33년)	29.97	45.78	25.65 (30.76년)	26.60	43.19

주: 1) 1은 국민연금, 2는 국민연금+기초연금, 3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각각 의미
 2) 코호트별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망치. 단,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종신연금 방식으로 수급한다
 가장하고 가입기간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5.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 결과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40~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유인책들을 제도화한다면 노후소득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제도가 현행과 같이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근본적인 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선택 시 현행과 같이 5년 이상의 수급기간이 아닌 15년 이상의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으로 선택하도록 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금전환정책 중 강력한 의무 연금전환정책 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유연성 있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을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

- 디폴트 연금전환정책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연금전환율도 증가시켜 개인의 장수리스크와 투자리스크를 금융기관으로 전가시킬 수 있으며 사망 시까지 일정 소득 확보 가능
- 후에 근로 환경 및 경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연금전환정책을 강화시킬 필요 있음

집필자 | 백혜연(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44-287-829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